

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1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NPO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음
- 나. 최근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단위,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단체 간 교류·성장 지원, 지역 의제해결 지원 등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고자 함
- 다. 서울 동남권(서초구·강남구·송파구·강동구) NPO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, 권역 내 NPO들의 협업·연결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
- 라. 기존 NPO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,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역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·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,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마. 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,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
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
⇒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1) 사업목적

- 서울 동남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※ 동남권 :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

2) 위탁사무 내용

- ①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·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②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·컨설팅
- ③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④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,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⑤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⑥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
-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(안) : 2020년 1월
- 소재지(안) :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, 4층(가락동)
- 시설규모(안) : 386.55㎡(전용 약250㎡)

다목적실, 협업보육실, 회의실, 사무실 등

| | |
|--|--|
| <p>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(안)</p> <p>씨타빌 아파트, 동성아파트, 통일씨타빌, 가락2동 주민센터, 송파경찰서, 주성드림 헬리스</p> | |
| <p>지역여건</p> | <p>지하철3·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 부근으로 동남권 내 소통·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 (송파경찰서, 우체국 등 밀집)</p> |

마. 민간위탁기간

-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20.1.1. ~ 2022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0년 소요예산 : 700,000천원('20년도 예산편성 추진)
 - 민간위탁금 700백만원 (인건비 250, 운영비 196, 사업비 254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적정 (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, 2019. 7. 1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센터의 위탁)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 문성훈 (☎2133-6561)